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2제3항 관련)

1. 지정폐기물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0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	폐폴리에틸렌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2	폐폴리프로필렌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4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 트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5	폐페놀수지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6	폐폴리우레탄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7	폐합성고무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8	폐폴리스티렌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09	폐아크리로나이트릴브타디엔 스티렌(ABS수지)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1-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 물	R-3-3, R-4-4, R-10	해당 없음
01-02	오니류		
01-02-01	폐수처리오니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01-02-02	유리식각공정오니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01-02-03	제지공정오니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01-02-04	실리콘제조공정오니	R-3-1, R-3-2, R-3-4, R-10	해당 없음
01-02-05	보크사이트잔재물	R-3-1, R-3-2, R-10	해당 없음
01-02-99	그 밖의 공정 오니	R-3-1, R-3-2, R-3-3, R-3-4, R-4-1, R-10	해당 없음
01-03	폐농약		
01-03-01	유기인계폐농약	재활용 금지	
01-03-02	유기염소계폐농약	재활용 금지	
01-03-03	카바메이트계(Carbamate) 폐농약	재활용 금지	
01-03-99	그 밖의 폐농약	재활용 금지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02	부식성 폐기물		
02-01	폐산		
02-01-01	폐염산	R-2-1, R-3-2, R-3-4, R-4-7,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 폐축전지는 제외한다)	R-2-1, R-3-2, R-3-4, R-4-7, R-10	해당 없음
		R-4-9, R-5-1, R-10	해당
02-01-03	폐질산	R-2-1, R-3-2, R-3-4, R-4-7,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1-05	LCD·반도체 공정의 폐산	R-2-1, R-3-2, R-3-4, R-4-7,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1-99	그 밖의 폐산	R-2-1, R-3-2, R-3-4, R-4-7,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2	폐알칼리		
02-02-01	폐가성소다수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2-02	폐암모니아수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R-2-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9, R-10	해당
0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01	광재		
03-01-01	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	R-3-1, R-3-2,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03-01-02	납 열처리·야금(冶金) 공정 광재	R-3-1, R-3-2, R-10	해당 없음
03-01-03	아연열처리공정광재	R-3-1, R-3-2, R-10	해당 없음
03-01-04	철제조공정광재(철광 원석 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 그는 제외한다)	R-3-1, R-3-2, R-10	해당 없음
03-01-99	그 밖의 광재	R-3-1, R-3-2, R-10	해당 없음
03-02-00	분진	R-3-1, R-3-2, R-3-3,R-3-4, R-10	해당 없음
03-03	폐주물사 및 폐사		
03-03-01	점토점결폐주물사	R-1-1, R-3-5, R-4-1, R-10	해당 없음
03-03-02	화학점결폐주물사	R-1-1, R-3-5, R-4-1, R-10	해당 없음
03-03-03	샌드블라스트폐사	R-1-1	해당 없음
03-03-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R-1-1, R-3-5, R-4-1, R-10	해당 없음
03-07	폐촉매		
03-07-01	금속성폐촉매	R-2-1, R-3-1, R-3-2, R-3-3, R-3-4, R-4-7, R-10	해당 없음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R-2-1, R-3-2, R-3-4, R-4-7, R-10	해당 없음
03-08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03-08-01	폐흡착제	R-2-1, R-3-1, R-3-2, R-3-4, R-4-5, R-10	해당 없음
03-08-02	폐흡수제	R-2-1, R-3-1, R-3-2, R-3-4, R-4-5, R-10	해당 없음
03-10	폐전지류		
03-10-01	황산이 포함된 폐이차전지	R-2-1, R-3-2, R-3-4, R-4-7, R-10	해당 없음
		R-4-9, R-5-1, R-10	해당
03-10-02	알칼리가 포함된 폐이차전지	R-2-1, R-3-2, R-3-4, R-4-7, R-10	해당 없음
		R-4-9, R-5-1, R-10	해당
03-10-03	리튬계 폐이차전지(침수·	R-3-1, R-3-2, R-3-3,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화재·변형·파손 등이 발 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 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 으로 한정한다)	R-10	
03-10-04	이차전지 스크랩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03-10-99	그 밖의 폐이차전지(침수· 화재·변형·파손 등이 발 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 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 으로 한정한다)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04	폐유기용제		
04-01-00	할로젠족 폐유기용제	R-2-1, R-3-2, R-4-6, R-10	해당 없음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R-2-1, R-3-2, R-4-6, R-9-2, R-10	해당 없음
05	폐페인트 및 폐락카		
05-01-00	폐유성페인트	R-2-1, R-9-2, R-10	해당 없음
		R-3-2, R-4-6, R-4-7, R-10	해당
05-02-00	폐수성페인트	R-2-1, R-3-2, R-4-7, R-10	해당 없음
05-03-00	폐락카	R-2-1, R-9-2, R-10	해당 없음
		R-3-2, R-4-6, R-4-7, R-10	해당
06	폐유		
06-01	폐광물유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 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 유를 말한다)	R-3-3, R-4-6, R-9-2, R-10	해당 없음
06-01-02	폐연마유·비수용성 폐 절삭 유·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 정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 다)	R-3-1, R-3-2, R-4-6, R-9-2, R-10	해당 없음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R-3-1, R-3-2, R-4-6,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기예유·냉동기유·터어빈유· 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 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 세스유 등을 말한다)	R-9-2, R-10	
06-01-04	폐연료유	R-4-6, R-9-2, R-10	해당 없음
06-01-05	폐오일필터	R-3-1, R-3-2, R-9-2.R-10	해당 없음
06-01-06	기름 함유 폐전선·폐케이블	R-3-1, R-3-2, R-4-6, R-9-2, R-10	해당 없음
06-01-07	폐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 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을 제 외한다)	R-3-1, R-3-2, R-4-6, R-9-2, R-10	해당 없음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 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 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R-3-1, R-3-2, R-4-6, R-9-2, R-10	해당 없음
06-02-00	폐동식물유	R-3-3, R-9-2, R-10	
06-03-00	그 밖의 폐유	R-2-1, R-4-6, R-9-2, R-10	해당 없음
07	폐석면		
07-01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을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 되는 폐석면		
07-01-01	흘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	재활용 금지	
07-01-02	흘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	재활용 금지	
07-02-00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 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 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 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 진	재활용 금지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모든 바닥비닐시트·방진마 스크·작업복, 집진필터 등	재활용 금지	
0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재활용 금지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함유 폐유		
08-02-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	재활용 금지	
08-03-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의 것	재활용 금지	
08-04-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이 아닌 것	재활용 금지	
09	폐유독물질		
09-01-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재활용 금지	
09-02-00	연구·검사용 폐시약	재활용 금지	
09-03-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R-2-1, R-3-2, R-3-3, R-10	해당 없음
09-04-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허가물질 및 제한물질	R-2-1	해당 없음
10	의료폐기물		
10-11-00	격리의료폐기물	재활용 금지	
10-12	위해의료폐기물	재활용 금지	
10-12-01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활용 금지	
10-12-02	병리계폐기물	재활용 금지	
10-12-03	손상성폐기물	재활용 금지	
10-12-04	생물·화학폐기물	재활용 금지	
10-12-05	혈액오염폐기물	재활용 금지	
10-12-06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R-4-10	해당 없음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재활용 금지	
11	수은폐기물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11-01	수은함유폐기물		
11-01-01	수은 첨가 폐램프	R-3-3, R-4-1, R-10	해당 없음
11-01-02	수은 첨가 폐계측기기	R-3-3, R-4-1, R-10	해당 없음
11-01-03	수은 첨가 폐전지	R-3-3, R-4-1, R-10	해당 없음
11-01-99	그 밖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	R-3-3, R-4-1, R-10	해당 없음
11-02-00	수은구성폐기물	R-4-7	해당 없음
11-03-00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2. 사업장일반폐기물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51-01	유기성오니류		
51-01-01	정수처리오니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7-3, R-8-2, R-10	해당
51-01-02	하수처리오니	R-3-1, R-3-2, R-3-4, R-4-9,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6-1, R-6-2, R-7-3, R-8-2, R-9-5, R-10	해당
51-01-03	분뇨처리오니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6-1, R-6-2, R-7-3, R-8-2, R-9-5, R-10	해당
51-01-04	가축분뇨처리오니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6-1, R-6-2, R-7-3, R-8-2, R-9-5, R-10	해당
51-01-05	펄프·제지공정오니	R-3-1, R-3-2, R-3-3,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R-3-4, R-4-3, R-9-3, R-9-4, R-10	해당
		R-3-5, R-4-2, R-5-1, R-5-4, R-6-1, R-6-2, R-7-3, R-8-2, R-10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2, R-5-4, R-6-1, R-7-3, R-8-2, R-10	해당
51-01-07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R-3-1, R-3-2, R-3-3, R-3-4, R-4-3, R-9-3, R-9-4, R-10	해당 없음
		R-3-5, R-4-2, R-5-1, R-5-4, R-6-1, R-6-2, R-7-3, R-8-2, R-9-5, R-10	해당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6-1, R-7-3, R-8-2, R-9-5, R-10	해당
51-01-99	그 밖의 유기성오니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6-1, R-7-3, R-8-2, R-10	해당
51-02	무기성오니류		
51-02-01	폐수처리오니	R-3-1, R-3-2, R-3-3, R-3-4, R-4-1,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2-02	정수처리오니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2-03	하수처리오니	R-4-9,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2-04	하수준설토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2-05	건설오니	R-4-2, R-7-1, R-7-2,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R-7-3, R-7-6, R-10	
51-02-06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석재·골재 생산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로 한정한다)	R-4-2, R-7-1, R-7-2, R-7-3, R-7-4, R-7-6, R-10	해당
51-02-07	유리식각공정오니	R-3-1, R-3-2,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2-08	실리콘공정오니	R-3-1, R-3-2,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2-09	보크사이트 잔재물	R-3-1, R-3-2, R-4-7, R-10	해당 없음
		R-4-2, R-7-3, R-10	해당
51-02-10	영농폐기물(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에 한정한다) 폐수처리오니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2-11	영농폐기물(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에 한정한다) 공정오니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R-3-1, R-3-2,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R-3-1, R-3-2,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R-1, R-2, R-3-2, R-3-3, R-3-4, R-4-4,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51-03-02	폐합성고무류	R-1-1, R-2-1, R-3-3, R-3-4, R-4-4,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R-10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R-1-1, R-2-1, R-3-3, R-4-4, R-10	해당 없음
		R-8-1, R-9-1, R-10	해당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R-1-1, R-2-1,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51-03-05	양식용 폐부자	R-1, R-2,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R-1-1, R-2-1, R-3-3, R-3-4, R-4-4,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51-03-07	플라스틱 폐포장재	R-1, R-2, R-3-3, R-3-4, R-4-4, R-9-3, R-10	해당 없음
		R-3-5, R-8-1, R-8-2, R-9-1, R-10	해당
51-03-08	폐어망	R-1, R-2, R-3-3, R-4-4, R-9-3, R-9-1,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 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 전선을 포함한다)	R-1, R-2, R-3-1, R-3-3, R-3-4, R-4-4, R-9-3,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51-04	광재류		
51-04-01	고로슬래그	R-3-1, R-3-2, R-3-3, R-3-4, R-4-7, R-10	해당 없음
		R-3-5, R-4-2, R-5-1,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4-02	제강슬래그	R-3-1, R-3-2, R-3-3, R-3-4, R-4-7,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R-3-5, R-4-2, R-5-1,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4-03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R-3-1, R-3-2, R-3-3,R-3-4, R-4-7, R-10	해당 없음
		R-3-5,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4-04	선광공정광재	R-3-1, R-3-2, R-3-3,R-3-4, R-4-7, R-10	해당 없음
		R-3-5,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4-99	그 밖의 광재류	R-3-1, R-3-2, R-3-3, R-3-4, R-4-7, R-10	해당 없음
		R-3-5,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5	분진류(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		
51-05-01	제철공정분진	R-3-1, R-3-2, R-3-3, R-3-4, R-4-1, R-10	해당 없음
		R-4-2, R-7-3, R-8-1,R-10	해당
51-05-02	시멘트제조공정분진	R-3-4, R-10	해당 없음
		R-4-2, R-7-3, R-10	해당
51-05-03	발전시설분진	R-3-4, R-10	해당 없음
		R-4-2, R-7-3, R-10	해당
51-05-04	폐실리카 품(규소철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을 말한다)	R-3-4, R-10	해당 없음
		R-4-2, R-7-3, R-10	해당
51-05-99	그 밖의 분진	R-3-1, R-3-2,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8-1, R-10	해당
51-06	폐주물사 및 폐사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51-06-01	점토점결폐주물사	R-1-1, R-4-1	해당 없음
		R-3-5, R-4-2, R-7-1, R-7-2, R-7-3, R-7-5, R-7-6, R-10	해당
51-06-02	화학점결폐주물사	R-1-1, R-4-1	해당 없음
		R-3-5, R-4-2, R-7-5,R-10	해당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R-1-1, R-3-1, R-3-2, R-10	해당 없음
		R-3-5, R-4-2, R-10	해당
51-06-04	폐여과사	R-1-2	해당 없음
		R-2-2, R-4-2, R-10	해당
51-06-99	그 밖의 폐사	R-1-1, R-3-1, R-3-2, R-7-5,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7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51-07-01	폐내화물	R-3-1, R-3-2,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7-02	폐도자기조각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08	소각재		
51-08-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R-3-3, R-3-4, R-4-9,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8-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R-3-3, R-3-4, R-10	해당 없음
		R-4-2, R-7-1, R-7-3, R-10	해당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R-3-3, R-3-4, R-4-9,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8-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	R-3-3, R-3-4,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 된 경우를 말한다)	R-4-2, R-10	해당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 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 합된 경우를 말한다)	R-3-3, R-3-4, R-4-9,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9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51-09-01	안정화 처리물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9-02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09-03	고화 처리물	R-3-4, R-10	해당 없음
		R-4-2, R-7-3, R-10	해당
51-09-04	킬레이트(Chelate)처리물	R-3-4, R-10	해당 없음
		R-4-2, R-7-3, R-10	해당
51-09-99	그 밖의 고형화·고화 처리 물	R-3-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10	폐촉매		
51-10-01	금속성폐촉매	R-1-1, R-2-1,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10-02	페이온교환수지	R-1-1, R-2-1, R-3-1, R-3-2, R-3-3, R-3-4, R-4-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10-03	폐멤브레인수지	R-1-1, R-2-1, R-3-1, R-3-2, R-3-3, R-3-4, R-4-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10-99	그 밖의 폐촉매	R-1-1, R-3-1, R-3-2, R-3-4, R-4-1, R-4-7,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11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51-11-01	폐흡착제	R-1-1, R-3-1, R-3-2, R-3-4, R-4-5,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R-4-2, R-10	해당
51-11-02	폐 흡수제	R-1-1, R-3-1, R-3-2, R-3-4, R-4-5,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11-03	폐 활성탄	R-1-1, R-3-4, R-4-5, R-10	해당 없음
		R-3-5, R-4-2, R-8-2, R-10	해당
51-12	폐 석고 및 폐 석회		
51-12-01	폐 석고	R-1-1, R-3-2, R-3-3, R-3-4	해당 없음
		R-4-2, R-5-1, R-7-2, R-7-3, R-10	해당
51-12-02	폐 석회	R-1-1	해당 없음
		R-3-3, R-4-2, R-5-1, R-7-2, R-7-3, R-10	해당
51-13	연소잔재물		
51-13-01	연탄재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13-02	액체연료연소재	R-4-5, R-10	해당 없음
		R-4-2, R-8-2, R-10	해당
51-13-03	석탄재	R-3-2, R-3-3, R-3-4, R-4-7, R-10	해당 없음
		R-4-2, R-5-1,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R-3-1, R-3-2, R-4-7,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10	해당
51-14	폐 석재류		
51-14-01	폐 석분토사(석재·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응집 미립 분을 포함한다)	R-4-2, R-7-1, R-7-2, R-7-3, R-7-4, R-7-6, R-10	해당
51-14-02	폐 석재	R-1-1, R-2-1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4, R-7-6, R-10	해당
51-15	폐타이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 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15-01	자동차 폐타이어	R-1-2, R-2-1, R-2-2,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R-3-3, R-3-4, R-4-4, R-4-5, R-9-1, R-9-3, R-10	
		R-4-2, R-8-1, R-8-2, R-10	해당
51-15-02	그 밖의 폐타이어	R-1-2, R-2-1, R-2-2, R-3-3, R-3-4, R-4-4, R-4-5, R-9-1, R-9-3, R-10	해당 없음
		R-4-2, R-8-1, R-8-2, R-10	해당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 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R-3-3, R-4-8, R-9-2,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	동·식물성잔재물(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유통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51-17-01	동물사체	R-4-8,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02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한다)	R-3-4, R-4-8, R-9-4, R-4-2,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03	수산물가공잔재물	R-3-4, R-4-8,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04	폐패각	R-1-2, R-2-2, R-3-4, R-4-7, R-10	해당 없음
		R-4-2, R-5-1, R-5-2, R-5-4, R-7-2, R-10	해당
51-17-05	폐모피류	R-1-1, R-2-1, R-4-8,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R-10	
51-17-06	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	R-1-1, R-2-1, R-2-2, R-3-4, R-4-8,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07	동물털	R-2-1, R-4-8, R-10	해당 없음
		R-5-1, R-5-2, R-10	해당
51-17-08	동물성유지류	R-3-3, R-4-8,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R-4-8,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21	주정박	R-5-3, R-9-1, R-9-3,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22	맥주박	R-5-3, R-9-1, R-9-3,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23	유박유잔재물	R-3-3, R-5-3, R-9-1, R-9-3,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17-24	초분류	R-1-2, R-5-3, R-6-1, R-9-1, R-9-3,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8-2, R-10	해당
51-17-25	커피찌꺼기	R-4-5, R-4-8, R-5-1, R-5-2, R-5-3, R-9-3, R-9-4, R-10	해당 없음
		R-2-2, R-4-2, R-4-7, R-5-4, R-6-1, R-8-2, R-9-1, R-9-5, R-10	해당
51-17-26	버섯폐배지	R-4-8, R-5-1, R-5-2, R-9-3, R-9-4, R-10	해당 없음
		R-5-4, R-6-1, R-8-2,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R-9-1, R-9-5, R-10	
51-17-27	과채류(「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R-5-1, R-5-2, R-5-4, R-6-1, R-9-4, R-10	해당 없음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R-5-3, R-9-1, R-9-3, R-9-4, R-10	해당 없음
		R-4-5, R-5-1, R-5-2, R-5-4, R-6-1, R-8-2, R-10	해당
51-17-30	식재료 및 조리부산물(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자 중 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배출자 중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R-5-1, R-5-2, R-5-4, R-6-1, R-9-4, R-10	해당 없음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R-4-8, R-5-3, R-9-1,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2, R-5-4, R-8-2, R-10	해당
51-18	폐전기전자제품류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R-1-1, R-2-1,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R-1-1, R-2-1,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51-18-03	프린트토너 및 폐카트리지 폐부속품	R-1-1, R-2-1,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R-1-1, R-2-1,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51-19-00	왕겨 및 쌀겨	R-1-2, R-4-5, R-5-3, R-6-1, R-8-2, R-9-1, R-9-3, R-10	해당 없음
		R-4-2, R-5-1, R-5-2, R-5-4, R-10	해당
51-20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51-20-21	임목 폐목재(건설공사·산지 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줄기 등을 말한다)	R-1-1, R-3-4, R-4-2, R-4-3, R-4-5, R-5-1, R-5-2, R-5-3, R-8-1, R-8-2, R-9-1, R-9-3, R-9-5, R-10	해당
51-20-22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 에서 발생하는 나무 껍질· 톱밥·대패밥 등을 말한다),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 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R-1-1, R-1-2, R-3-4, R-4-2, R-4-3, R-4-5, R-5-1, R-5-2, R-5-3, R-6-1, R-8-1, R-8-2, R-9-1, R-9-3, R-9-5, R-10	해당
51-20-23	폐도장목·폐목재포장재·폐 전선드럼·건설현장 폐목재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R-1-1, R-2-1, R-3-4, R-4-2, R-4-3, R-4-5, R-5-1, R-5-2, R-5-3,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24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 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폐목재(목재부산물 및 분진 을 포함한다)	R-1-1, R-2-1, R-3-4, R-4-2, R-4-3, R-4-5,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25	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목 재부산물 및 분진을 포함하 다) 및 건설현장의 실외목 재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폐 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 에 사용된 폐목재	R-1-1, R-2-1, R-4-2,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26	폐철도목재받침목	R-1-2, R-2-2, R-3-4, R-4-2, R-4-5,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27	폐가구류	R-1-1, R-2-1, R-3-4, R-4-2, R-4-3, R-4-5, R-5-1, R-5-2, R-5-3,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R-8-1, R-8-2, R-9-1, R-9-3, R-10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R-3-4, R-4-2, R-4-5, R-5-1,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1	폐토사류		
51-21-01	폐토사	R-3-1, R-3-2,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21-02	건설폐토석	R-4-2, R-7-1, R-7-2, R-7-3, R-10	해당
51-21-03	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	R-4-2, R-10	해당
51-22	폐콘크리트류		
51-22-01	폐콘크리트	R-1-2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22-02	폐철도콘크리트받침목	R-1-2	해당 없음
		R-2-2, R-4-2, R-10	해당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R-4-2, R-10	해당
51-24-00	폐벽돌	R-1, R-2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10	해당
51-25-00	폐블록	R-1, R-2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10	해당
51-26-00	폐기와	R-1, R-2, R-3-4,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10	해당
51-27	폐섬유류		
51-27-01	폐천연섬유	R-1-1, R-2-2,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51-27-02	폐합성섬유	R-1-1, R-2-2, R-3-2,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R-8-1, R-8-2, R-10	
51-27-03	폐의류	R-1-1, R-2-1, R-2-2,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51-27-99	그 밖의 폐섬유	R-1-1, R-2-2,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51-28	폐지류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R-3-3, R-4-3, R-9-1,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51-28-02	폐종이류	R-3-3, R-4-3, R-9-1,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51-28-03	폐벽지	R-3-3, R-4-3, R-9-1, R-9-3,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51-29	폐금속류		
51-29-01	고철	R-3-3, R-4-1, R-10	해당 없음
51-29-02	비철금속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R-3-3, R-4-1, R-10	해당 없음
51-29-04	폐금속 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R-2-1, R-3-3, R-4-1, R-10	해당 없음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51-30	폐유리류		
51-30-01	폐유리	R-3-3,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 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	R-2-1, R-3-3,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0-03	페스마트유리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0-04	폐유리섬유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0-05	수은폐기물이 아닌 수은함 유폐기물 처리잔재물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R-4-1, R-4-2, R-10	해당
51-30-99	그 밖의 폐유리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1-00	페타일	R-3-1,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2-00	페보드류	R-3-1,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3-00	페판넬	R-3-1,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35-00	폐전주(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덮개류 등을 포함한다)	R-3-1, R-10	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51-36	폐가스포집물		
51-36-01	이산화탄소스트립	R-4-2, R-4-3, R-4-4, R-4-7, R-10	해당
51-36-02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R-4-2, R-4-3, R-4-4, R-4-7, R-10	해당
51-37	폐냉매물질		
51-37-01	가전제품회수폐냉매물질	R-1-1, R-3-4, R-10	해당 없음
51-37-02	자동차회수폐냉매물질	R-1-1, R-3-4,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R-1-1, R-3-4, R-10	해당 없음
51-37-99	그 밖의 폐냉매물질	R-1-1, R-3-4, R-10	해당 없음
51-38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51-38-01	음식물류 폐기물	R-4-9, R-5-3, R-9-3,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6-1, R-10	해당
51-38-02	중간가공 음식물류 폐기물	R-5-3, R-9-3,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6-1, R-10	해당
51-38-0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 물(액상의 경우만 해당한 다)	R-4-9,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51-38-99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 리잔재물	R-3-1, R-3-2, R-10	해당 없음
		R-8-2, R-9-2, R-10	해당
51-39-00	폐사료	R-3-3, R-3-4, R-5-3, R-10	해당 없음
		R-5-1, R-9-4, R-10	해당
51-40	폐소화기류		
51-40-01	폐분말 소화기	R-1-1, R-3, R-4-7, R-10	해당 없음
		R-5-1, R-10	해당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R-4-1, R-10	해당 없음
		R-4-4, R-10	해당
51-41	폐전지류		
51-41-01	폐일차전지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41-04	폐태양전지·전자기기페이 스트·태양광 폐패널	R-2-1,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41-05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침 수·화재·변형·파손 등이	R-2-1, R-2-2, R-3-1, R-3-2, R-3-3, R-4-1,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 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 은 제외한다)	R-10	
51-41-06	구동용 폐이차전지(침수· 화재·변형·파손 등이 발 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 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 은 제외한다)	R-2-1, R-2-2,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41-07	폐양극활물질(양극재 또는 전구체 제조공정에서 발생 하는 것을 포함한다)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41-08	폐연료전지	R-2-1, R-2-2,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41-99	그 밖의 폐이차전지(침수· 화재·변형·파손 등이 발 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 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 은 제외한다)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42-00	폐의약품류	재활용금지	
51-43-00	폐흑연가루	R-1-1, R-2-1, R-4-5,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44-00	나노폐기물(나노물질을 제 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 된 분진을 말한다)	R-3-4, R-4-4, R-10	해당 없음
		R-4-2, R-10	해당
51-45	폐차발생폐기물		
51-45-01	폐차파쇄잔재물	R-3-1, R-3-2, R-3-3, R-9-2,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51-45-02	폐차부품류	R-1-1, R-2-1	해당 없음
51-45-99	그 밖의 폐차발생폐기물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51-46-00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	재활용 금지	
51-47	조명폐기물		
51-47-01	폐형광등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51-47-02	폐발광다이오드조명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51-99-00	그 밖의 폐기물		

3. 생활폐기물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합성수지 종량제 봉투에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R-3-3, R-9-1, R-10	해당 없음
91-02-00	음식물류 폐기물(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R-5-1, R-5-2, R-5-4, R-6-1, R-9-3, R-9-4, R-10	해당 없음
91-03-00	폐식용유(가정 및 음식점에서 분리배출된 것을 말한다)	R-3-3, R-4-8, R-9-2,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해당
91-04-00	폐지류(종이팩을 포함한다)	R-3-3, R-4-3,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2, R-10	해당
91-05-00	고철 및 금속캔류	R-3-3, R-4-1, R-10	해당 없음
91-06-01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은 제외한다)	R-3-3, R-3-4,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91-06-02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	R-3-3, R-4-4, R-10	해당 없음
		R-8-1, R-10	해당
91-06-03	폐합성고무류	R-3-3, R-3-4,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91-07-01	유리병	R-2-1, R-3-3, R-4-2,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91-07-02	폐유리	R-3-3, R-4-2, R-10	해당 없음
91-08-00	폐의류 및 원단류(섬유재질 의 커튼, 현수막 등을 포함 한다)	R-1-1, R-2-1, R-2-2, R-3-3,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91-09-00	폐전기전자제품	R-1-1, R-2-1, R-3-1, R-3-2, R-3-3, R-3-4, R-10	해당 없음
91-10	폐목재 및 폐가구류		
91-10-01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R-1-1, R-2-1, R-5-1, R-9-3, R-10	해당 없음
		R-3-4, R-4-5, R-8-1, R-8-2, R-9-1, R-10	해당
91-10-02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 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 는 제외한다)	R-1-1, R-2-1, R-9-3, R-10	해당 없음
		R-3-4, R-4-2, R-4-5, R-8-1, R-8-2, R-9-1, R-10	해당
91-10-03	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	R-1-1, R-2-1,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91-10-04	폐가구류	R-1-1, R-2-1, R-5-1, R-9-3, R-10	해당 없음
		R-3-4, R-4-2, R-4-5, R-8-1, R-8-2, R-9-1, R-10	해당
91-11-00	건설폐재류(콘크리트, 벽돌 등을 말한다)	R-4-2, R-10	해당 없음
		R-7-1, R-7-2, R-7-3, R-10	해당
91-12-00	폐타일 및 도자기류	R-4-2, R-10	해당 없음
		R-7-1, R-10	해당
91-13	조명폐기물		
91-13-01	폐형광등	R-3-1, R-3-2,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 요 여부
		R-3-3, R-10	
91-13-02	폐발광다이오드조명	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91-14-00	폐전지류	R-3-1, R-3-3, R-10	해당 없음
91-15-00	연탄재	R-4-2, R-7-1, R-7-2, R-7-3, R-7-6, R-10	해당
91-16-00	동물성 잔재물(동물의 사 체, 수산가공물, 유지 등을 포함한다)	R-3-3, R-4-8, R-5-1, R-5-2, R-5-4, R-9-4, R-10	해당 없음
91-17	식물성 잔재물		
91-17-01	커피찌꺼기	R-4-5, R-4-8, R-5-1, R-5-2, R-5-3, R-9-3, R-9-4, R-10	해당 없음
		R-2-2, R-4-2, R-4-7, R-5-4, R-6-1, R-8-2, R-9-1, R-9-5, R-10	해당
91-17-02	버섯폐배지	R-4-8, R-5-1, R-5-2, R-9-3, R-9-4, R-10	해당 없음
		R-5-4, R-6-1, R-8-2, R-9-1, R-9-5, R-10	해당
91-17-03	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	R-4-8, R-5-1, R-5-2, R-5-4, R-9-4, R-10	해당 없음
		R-4-5, R-8-2, R-9-1, R-10	해당
91-18-01	영농폐기물(농약용기류)	R-3-3, R-10	해당 없음
91-18-02	영농폐기물(농촌폐비닐)	R-3-3, R-3-4, R-4-4, R-9-1, R-9-2,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	해당
91-19-00	폐소화기류	R-1-1, R-3, R-4-7, R-10	해당 없음
		R-4-1, R-4-4, R-5-1, R-10	해당
91-21	1회용 컵		
91-21-01	종이 컵	R-3-3, R-4-3, R-10	해당 없음
91-21-02	합성수지 컵	R-3-3, R-4-4, R-10	해당 없음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91-21-03	금속 컵	R-3-3, R-4-1, R-10	해당 없음

비고

1.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이 표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4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이 표에서 재활용 가능 유형을 정하지 않은 폐기물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할 수 있다.
3.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가 "해당"인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전에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의 분석 결과 등을 통하여 해당 폐기물이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인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활용 유형 중 R-10은 동일한 사전 분석·확인 필요 대상("해당" 또는 "해당 없음")으로 분류된 각각의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유형을 말한다.